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0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4일
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기능을 자문기능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.
- 그밖에 기존 조례상의 위원회 약칭과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고,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약칭을 ‘위원회’에서 ‘시민권익위원회’로 함(안 제11조 내지 제14조)
-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 운영 중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제4항 신설).
- 시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 중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또는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제5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민원을 처리하고,”를 “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로”로, “위하여”를 “도모하기 위하여”로, “심의·자문하는”을 “자문하는”으로,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시민권익위원회”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시민권익위원회”로 한다.

4.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안 제13조제1항 중 “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”를 “시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권익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14조의 제목 “(위원회 운영)”을 “(시민권익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시민권익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

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시민권익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위원회 운영”을 “시민권익위원회 운영”으로 한다.

④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제 11 조 (시민 권 익 위 원 회 설치 및 구성) ① 의장 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 원을 처리하고, 시민 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 는 서울특별시의회 시 민 권 익 위 원 회 (이 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1. (생략) 2. 의정모니터 구성· 운영계획에 관한 사 항 법제담당관 <u><신 설></u> 3.·4. (생략) 5. 의회의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. ~ 8.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	제 11 조 (시민 권 익 위 원 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 ----- 민원 의 전문적인 처리로 - ----- 도모 하기 위하여 ----- 자문하는 ----- ----- ---- “시민권익위원 회”-----. 1.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.·3. (개정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<u><삭 제></u> 5. ~ 7. (개정안 제6호부 터 제8호까지와 같음) ② <u>시민권익위원회</u>---- ----- -----

	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4. (생략) ③ (생략)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 민원담당관이 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(생략)	1. ~ 4.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<u>시민권익위원회</u>----- -----.
<신설>	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	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 <u>시민권익위원회</u>를 대표하며 <u>시민권익위원회</u>-----. ② (개정안과 같음) 제14조(<u>시민권익위원회</u>의 운영) ① <u>시민권익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· 2. (개정안과 같음) ② <u>시민권익위원회</u>-----

③ _____

시민권익위원회 _____

_____.

④ 시민권익위원회는 필
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
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
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
을 청취하거나 협조를
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민권익위원회는
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
문하거나 전문기관 또
는 단체, 전문가 등에
게 조사 또는 연구 등
을 의뢰 할 수 있다.

⑥ 시민권익위원회의 -

_____.

⑦ _____
 _____ 시민권익위원회
회 운영 _____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(이하 “시민권익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의회신문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시 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민원현황에 관한 분석 사항
4.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
5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
6. 민원 관련 법·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원장이 민원 처리와 시민 권익 보호·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2.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3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분야별 민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시민권익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민원담당관이 된다.

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시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4조(시민권익위원회의 운영) ①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1. 재적위원 3분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2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.
- ⑥ 시민권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.
-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(이하 “시민권익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u> <u>1.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2. 의회신문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3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시 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민원 현황에 관한 분석 사항</u> <u>4.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 <u>5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</u> <u>6. 민원 관련 법·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u>

7. 그 밖에 위원장이 민원 처리와 시민 권익 보호·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2.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3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분야별 민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시민권익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민원담당관이 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시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시민권익위원회의 운영)

①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

수 있다.

1. 재적위원 3분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④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.

⑥ 시민권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.

제11조 (생 략)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